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영학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연철흙 의원 등 7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년 8월 13일

○ 회부일자 : 2019년 8월 14일

3. 제안이유

-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임.(2015. 5.18 공포)
- 주 52시간 노동제 시행과 더불어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여가 문화 조성과 여가활성화를 통해 충북 도민에게 여가가 있는 삶을 제공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도민 여가 활동 실태조사 등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여가 활성화 사업 및 여가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제10조).
- 도민의 여가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위원회 설치 (안 제11조).
-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13조).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가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여가 문화 조성과 여가 활성화를 통해 충북도민에게 여가가 있는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
 - 도민 여가 활동 실태조사 등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여가 활성화 사업 및 여가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도민의 여가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 도민 여가 활성화 위원회 설치 (안 제11조) 등을 규정하였음.

- 주52시간 노동제도 정착에 따라 여가활용에 대한 도민의 욕구는 증대될 것이며 충청북도는 도민에게 건전한 여가문화 보급과 여가관련 각종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음.

붙임: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 끝.